

제안 투표 개요

뉴욕시 질문 #1: 임기 제한

현재 뉴욕시 현장은 시장, 감사관, 공익대변인, 자치구장 (Borough President) 및 시의회 위원의 최대 복무 임기 수를 3 번의 역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상기 직책을 담당할 사람들의 가능한 최대 역임 수를 3 번에서 2 번으로 축소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은 시의회가 뉴욕시의 모든 현직 선출 공무원들이 복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임기 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시의회가 변경하는 임기 제한이 단지 미래의 선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은 2010 년 11 월 본선 후 선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효하며 현직 선출 공무원들의 경우 현재의 3 번 임기 제한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뉴욕시 질문 #2 : 선거 및 정부 행정

독립 유세 경비의 공개. 현재 유세 재정 위원회(CFB)는 시정부 직책 입후보자에게 포괄적인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시정부 입후보자로부터 독립되어 경비를 지출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보고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 제안은 시정부 입후보자 또는 국민투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1,000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개정 제안은 유세 재정 위원회가 뉴욕시 선거 날짜 이전 12 개월 동안 특정 입후보자를 지원 또는 반대하기 위해 \$5,000 이상의 독립 경비를 지불하는 모든 단체가 그 단체에 기부한 모든 단체의 신원을 그리고 선거 날짜 이전 12 개월 동안 그 단체에 \$1,000 이상의 금액을 기부한 모든 개인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 제안은 뉴욕시 공무원직 입후보자를 지원 또는 반대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가 \$1,000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는 모든 광고 및 기타 의사소통 수단은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에 불복종하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피선거권. 이 현장 개정안은 많은 경우 입후보자들이 예선 및 본선 투표 명단에 오르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서명 수를 축소할 것이며 뉴욕시 선출 공무원직 출마가 좀더 수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 법에 의하면, 시장, 감사관 및 공익대변인 직책을 원하는 입후보자는 일부 상황 하에서 예선 투표 명단에 오르기 위해 또는 독립 입후보자의 경우 본선 투표 명단에 오르기 위해 7,500 개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치구장 직책을 원하는 입후보자는 일부 상황하에서 예선이나 본선 투표 명단에 오르기 위해 4,000 개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시의회 위원 직책을 원하는 입후보자는 예선 투표 명단에 오르기 위해 900 개의 서명이 필요 또는 독립 입후보자는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 2,700 개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 개정안은 본선 및 예선 투표에서 뉴욕시 전체 공무원직 투표에 필요한 서명을 3,750 개 이하로, 자치구 전체 공무원직 투표에 필요한 서명을 2,000 개 이하로, 그리고 시의회 위원직 투표에 필요한 서명을 450 개 이하로 축소시킬 것입니다. 현재 법규와 변함없이, 입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선이 개최되는 정당에 등록된 투표자 수의 5 퍼센트를 초과한 서명 또는 본선 투표 명단에 오르기 원하는 독립 입후보자의 경우 지난번 주지사 선거시 주지사가 획득한 투표자 수의 5 퍼센트를 초과한 서명을 수집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유권자 지원 위원회 및 유세 재정 위원회. 투표자 등록 및 투표 장려의 임무를 띤 유권자 지원 위원회(VAC)는 이제 이 현장 내에서 별도의 기관이 되며, 시장의 추천에 따라 투표 지원 코디네이터를 임명됩니다. 16 명의 개정 위원회는 시의회가 임명한 6 명, 시장이 임명한 3 명 및 해당 공직을 담당하는 7 명의 관리로 구성됩니다. 이 개정은 유권자 지원 위원회를 9 명으로 구성된 유권자 지원 자문 위원회(Voter Assistance Advisory Committee)로 재구성할 것이며, 이 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별개 정당 소속 위원 2 명, 시의회가 임명하는 별개 정당 소속 위원 2 명 및 자치구장이 임명하는 위원 1 명을 포함할 것입니다. 공익대변인 및 선거위원회 상무이사는 **직무상 권한** 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회장은 시의회 의장과의 상담하에 시장이 임명할 것입니다. 유권자 지원 기능은 일반적으로 유세 재정 위원회로 이전될 것이며, 이 위원회가 유권자 지원 코디네이터를 임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세 재정 위원회의 임기 착수일은 4 월 1 일에서 12 월 1 일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해 상충법. 현재 현장은 공무원에 대한 훈련 임무를 이해 상충 관리 위원회(COIB)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모든 공무원이 임명 후 60 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정기적으로 직접 또는 전자적으로 훈련을 받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부 기관들이 이해 상충 관리 위원회와의 상담하에 훈련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은 뉴욕시의 이해상충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최고 벌금을 \$10,000 에서 \$25,000 로 증가시키고, 이와 같은 위반에서 초래되는 모든 이득에 대한 회수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시정부 행정 법정. 현재 많은 시정부 기관이 시의 법규 위반 및 기타 문제들에 대한 판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판 청문회 사무국(OATH)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시정부 기관들을 위해 여러 판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 특정 종류의 판결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도 있습니다. 이 개정은 시장이 적절한 경우 행정 명령을 통해 시정부 법정 및/또는 판결 범주를 행정 재판 청문회 사무국과 통합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시장이 임명한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에게 행정 재판 청문회 사무국으로의 이전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추천할 것입니다. 행정 재판 청문회 사무국의 최고 행정법 판사는 적용될 5 년 임기를 대신해 행정 재판 청문회 사무국이 새로이 전달된 문제를 다른 행정법 판사에게 다른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은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의 심판관 권한을 현재의 단지 이 기관 면허 소유자의 위반 사항 담당 권한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모든 위반 사항을 담당하도록 확장할 것입니다.

시정부 보고 요건 및 자문 기관. 현재 뉴욕시의 지역 법규에 따라 시정부 기관은 필수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많은 정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법에 따라 상당수의 의사 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기관들이 존재합니다. 흔히 이와 같은 보고 요건 및 자문 기관의 존재는 무기한으로 계속됩니다.

이 현장 개정은 이와 같은 보고서 및 자문 기관의 지속적인 유용성 요건 여부를 검토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를 조성할 것이며, 이 위원회가 더 이상 충분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요건의 포기를 추천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요 시장 보조 기관의 피임명자 4 명 및 의장을 포함한 시의회 대표자 3 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의 포기를 추천하기 전에 검토 중인 요건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입수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내리는 모든 요건 포기 결정은 시의회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시의회는 요건의 포기를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의회가 거절하는 경우 그것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 시의회는 2/3 이상 투표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운영 보고서, 시정부 예산 및 3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요건과 관련된 일부 주요 현장 요건은 이 절차를 통해 포기될 수 없습니다.

시설 위치 지도. 매년 뉴욕시는 현재 법에 따라 시정부 시설 위치 결정에 사용될 지도와 설명문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 모든 뉴욕시 소유 부동산의 위치 및 현재의 용도, 모든 뉴욕시 부동산의 장래 사용을 위한 공약 및 뉴욕주 또는 연방 정부에 의해 또는 대리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 시설 및

사회 서비스 시설의 위치를 포함합니다.. 제안된 개정은 이 지도에 정부 기관 또는 대리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그리고 필적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영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교통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추가될 것입니다..